

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발 의 자 : 박춘선 의원 외 29명
- 의안번호 : 제2394호
- 발의일자 : 2025년 2월 3일
- 회부일자 : 2025년 2월 6일

2. 제 안 이 유

-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가로수 조성 등에 드는 비용을 30일 이내에 부담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
- 시민이 알기 쉽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3. 주 요 내 용

- 가.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가로수 조성 등에 드는 비용을 30일 이내에 부담하도록 함(안 제21조제4항)
- 나.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관리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3조제3항)

4. 참 고 사 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비대상사유서) 참조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로수 조성 등에 드는 비용의 납부 기한과 체납처분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임.

나. 검토 의견

-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) 제12조제3항¹⁾은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가 가로수 조성·관리와 관련한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, 이 경우 승인절차, 승인기간,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서울시는 동 조례 제18조의2에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승인을 받은 자에게 가로수 조성·관리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, 납부 기간 및 체납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.
-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4년 12월²⁾ 법이 개정되면서 일정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음.
- 안 제21조와 제23조는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승인을 받은 자는 가로수 조성 등에 드는 비용을 30일 이내³⁾에 납부하도록

1)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(가로수의 조성·관리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·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승인절차,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
2. 가로수의 옮겨심기
3. 가로수의 제거
4. 가로수의 가지치기
5.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·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

2)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(가로수의 조성·관리)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
3)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4조(납부기한의 지정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을

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비용 징수와 관련한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- 그 밖의 조항은 그간의 조례 개정을 통해 삭제된 조항이나 적절하지 않은 체계 등을 정비하고, 시민이 알기 쉽게 용어를 수정하는 것으로 이견 없음.